2022학년도 미원초등학교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안전계획』

Ⅰ 개요

1.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세부집행계획 수립), 동법 시행령 제2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예방 지역계획 수립), 제6조(학교계획 수립), 제7조(평가)
○ 경기도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제7조(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 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2. 비전과 목적

비 전	안전한 학교, 모두가 행복한 미원교육
목 적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행복한 미원학생

4대 분야	10대 중점 추진과제
1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2. 학교안전 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2 학생 안전교육 및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1. 현장중심 학생 안전교육 안착지원 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3. 학교 구성원 안전 역량 강화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1.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2. 교육활동 안전 강화 및 지원여건 마련
4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1. 학교안전 문화의 확산 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분교(위곡, 장락)는 분교 자체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3. 학교안전현황분석

가 학교안전위험성 진단 결과 반영

학교안전위험성 진단결과 주요 위험요소	2022 학교안전계획에 대책 반영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안전사고 우려로 인한 관리 감독 체제 마련	교직원들의 감독에 대한 명확한 방침과 절차 안내, 놀이 중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정기적 실시
자외선 노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학교의 규정 미비	자외선 노출, 미세먼지 노출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해결 방안 마련
재난 위험성 순위 : 교통사고(도로), 화재, 지진, 붕괴, 강풍, 황사, 감염병, 한파, 미세먼지 등 순으로 결정	재난 안전교육에서의 강조 순위 결정 -재난 유형별 안전교육과 실제 대피훈련 계획 수립

나 2021 학교안전계획의 평가 결과 및 2022대책 반영

1)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절차

TF 구성	분석	계획수립	시행
- 교장, 교감 - 행정실장 - 민주시민교육부장 안전담당 - 교육과정, 보건 과학정보, 체육 전공 - 학부모 - 민간 전문가 등	- 교육청 요구 - 관련 법령 - 학교 내·외 위험 요소 - 인적, 물적 - 2019계획평가	- 추진전략 결정 - 요구사항 반영 - 위험 요소별 예방·대응·복구 방안 수립 등 - 계획서 완료	- 학운위 심의 - 학교홈페이지 탑재 - 교육지원청 계획서 제출(3월) - 수정·보완

2) 2021 학교안전계획 반성 대책 반영

2021 학교안전계획 평가결과	2022 학교안전계획에 대책 반영	비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체험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 다양한 시청각 자료 활용 필요	코로나19 완화 시, 체험형 프로그램 활용
지진, 미세먼지 등의 다양한 형태의 재난 발생과 전염성 질병과 같은 여러 가지 학교 안전 위협 요소의 증가로 인한 안전교육의 필요성 증대	- 지진대피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 -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관련 대응체계 삽입 - 질병 예방 생활 지도 수시 지도 실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염병 안정교육 실시	

다 SWOT 분석

Strength	Weakness
- 학교 인근 유해 업소 부재 - 지역 인적.물적 환경에 밝은 배움터 지킴이 -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운영 - 노인공익활동 서비스 지원 - 보건교사 및 안전담당교사 주도의 각종 안전교육 실시 - 각종 안전교육 체험형 자료 구비	-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용이 - 학교 주변 가로등 부족 - 등하교 시간에 학교 인근 정차 차량 다수 - 학교 앞 골목 갓길 주차 차량 다수 - 면 소재지 학교로 교통안전 위험 상존
Opportunity	**Threat**
- 안전 관련 체험시설 방문을 통한 교육 가능 - 인근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한 안전교육 실시 가능	- 고속도로 ic와 접해 있으며 외부 전입 인구가 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거주지가 설악면 전역으로 넓게 분포함

4. 4대 분야 과제별 추진 내용

가 추진과제 목록

4대 분야	10대 추진 과제 및 추진 내용	비고
1 학교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1-1. 재난·안전 위기대응 체계 구축** 가. 재난 상황모니터링 및 정보공유체제 개선	진로·안전교육부
	1-2. 학교안전 관련조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 조직 일원화 나. 지역사회와 안전협력 체계 구축	교무기획부, 분교장 행정실
	1-3. 학교 및 학교주변 안전시스템 구축 가. 학교안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 매월 3월말까지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년도 계획 제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7조) 나.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실시	안전담당
2.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연수 내실화	**2-1. 현장중심 학생 안전교육 강화** 가. 지진대피 훈련 및 안전교육 강화 ① 6차시이상 재난대피 훈련(2차시 - 지진대피) 나. 수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① 3학년 전체, 연간 10시간 이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코로나19를 고려하여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 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라. 실험·실습 교육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① 실습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마. 생활 속 안전위험 분야 예방교육 강화 ① 폭염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 안전 확보 ③ 과학실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5분 안전교육) ④ 자외선, 대기질(황사,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보건교사)	안전담당 교무기획부, 분교장 보건 체육 전담교사 보건
	2-2. 체험위주 안전교육 강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필요) 가. 맞춤형 재난대응 안전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담당
	2-3. 학교 구성원 안전 역량 강화 가. 모든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실시 나.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강화	안전담당 보건
3.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3-1. 교육시설의 안전성 강화** 가. 교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①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점검 실시 나.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	행정실장
	3-2 교육활동 안전 강화 및 지원여건 마련 가. 안전한 주제별 체험학습의 제도적 정착 나. 진로체험 활동 안전관리 강화 ① 진로체험 안전 점검단 구성 다. 야외 수련활동 안전관리 강화 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강화 마. 돌봄교실 안전관리 강화 ①「초등돌봄교실 안전관리 길라잡이」적극 활용 바.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① 장애이해 및 학교(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 정서행동특성 검사에 따른 관심군 관리 강화 아. 학교안전사고 예방 심리적 치료체계 강화	교육연구부 안전담당 돌봄담당 푸름반 보건 진로·안전교육부
4.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4-1. 학교안전 문화의 확산 가. 나침반 5분 안전교육으로 안전교육 활성화 나. '학교 안전주간'운영으로 안전 문화 조성 ① 안전주간운영	안전
	4-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가. 안전사고 처리 후 평가활동 강화	보건, 안전

나 과제별 추진 부서 지정

교장 : 김*희
(학교안전책임관 : 한*희)

교육연구	진로·안전	보건	시설	교무기획
교육과정혁신부장	민주시민부장, 안전, 학급담임	보건교사	행정실장	교무부장
▶폭력·신변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약물·사이버 ▶응급처치	▶시설/재난안전	▶안전 네트워크 구성
추진사항	추진사항	추진사항	추진사항	추진사항
3-2-가 3-2-나 3-2-다	1-1-가 1-3-가 1-3-나 2-1-가 2-2-가 2-3-가 3-2-라 3-2-마 3-2-바 3-2-사 3-2-아 4-1-가 4-1-나	2-1-마(1) 2-1-마(4) 2-3-나 3-2-바(1) 4-2-가	1-2-가 3-1-가 3-1-나	1-2-가 1-2-나 2-1-나 2-1-다 2-1-라 2-1-마

Ⅱ 학교현황

1 학교현황 개요

학교명	미원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중앙로 120번길 11									
전 화	031-584-7708	FAX	031-584-7316	홈페이지	http://www.miwon.es.kr					
교 장	김*희	학교안전 책임관	한*희	행정실장	박*선					

학교 현황	학년	유치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총	특수학급	비고
	학급수	1	2	2	2	2	2	2	15	1	
	학생수	6	38	36	47	42	48	50	261	3	

교직원 현황	*(수정) 2021년 3월 기준						
	교장	교감	교 사	행정직	교육 공무직원	총계	안전관련 자격증소지자
	1	1	28	10	21	64	8

시설 현황	연면적	건축면적	교실수 (관리실포함)	실험실수	기숙사유무	체육실 유무	기타
	2,622	1,627	13	1	무	유	-

2 학교 위치도



<미원초등학교>



<미원초등학교 위곡분교장>



<미원초등학교 장락분교장>

비상차량 진입로

3 교육청 재난대응체계 및 비상연락처

가. 교육활동 중 위기상황 신속 대응

1) 신속한 구호 조치 및 보고 체계 구축(선조치 후보고)

의 미 "**사고대응 일이삼**"이란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의 줄임말

※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119에 신고(심폐소생술 필요시 동시, 즉시 시행)

사고자 구조(심폐소생술 즉시 시행, 2차 사고 예방 등)

선생님, 혹은 관리자에게 보고

* 생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 안전슬로건

- 학생안전상황실 중심의 일원화 된 보고 및 통합 대응
-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2) 학교에서 교육 지원청, 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해야 하는 재난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사고)

- 교육부 보고방법 : moe119@korea.kr 안전대표 메일 신설(24시간 가동)
- 도교육청 보고방법 : 사안별 해당부서(부서장은 상황판단회의 요청 여부 결정)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 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 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3) 교육부 동시보고 사안 이외의 재난, 안전사고 보고체계

가) 학교는 사안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해당과에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서 제출

나) 교육지원청은 사안 관련 도교육청 해당업무 소관 부서에 유선 보고 후, 사안 보고서를 제출

4) 재난·안전사고 보고 시 주의사항

○ 재난.안전사고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보고하는 것이 원칙임 단,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고

"교직원인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경우" 처리 요령

- **최초 1회 사안보고서 제출(의무)**

※ 피해자 이름, 성별, 담당업무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기재 생략

- 본인이 추가 보고를 반대하는 경우 추가 보고 생략
- 최초 보고 시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음'을 명시

5) 도교육청 주요 사안별 해당부서

사안명	전화번호[주간]	주관부서	비고 [협조 부서]
▪ 급식 식중독 사고	031-249-0586	학교급식협력과	
▪ 보건, 감염병	031-249-0292~3	학생건강과	
	031-820-0594	유아교육과	유치원 감염병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안전사고	031-820-0686~7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031-820-0595	유아교육과	유치원
▪ 체육활동 안전사고	031-249-0277~81	학생건강과	
▪ 학교운동부 사고	031-249-0286~9	학생건강과	
▪ 교육시설안전	031-249-0929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과
▪ 교육시설 붕괴	031-249-0929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과
▪ 미세먼지	031-249-0919	교육환경개선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031-249-0925	교육환경개선과	
▪ 과학실 실험·실습 사고	031-820-0673	융합교육정책과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 사고	031-820-0606	미래교육정책과	
▪ 직업계고 현장 실습 안전 사고	031-820-0605	미래교육정책과	
▪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중 사고	031-820-0792	융합교육정책과	
▪ 학교폭력	031-820-0752	학생생활인권과	
▪ 학생 성희롱.성폭력	031-820-0767	학생생활인권과	
▪ 교원에 의한 학교성폭력	031-820-0767	학생생활인권과	
▪ 자살, 자살시도, 자해, 유괴·실종	031-249-0863	학생생활인권과	
	031-820-0594	유아교육과	유치원 유괴·실종
▪ 아동학대	031-249-0862	학생생활인권과	
	031-820-0594	유아교육과	유치원
▪ 특수학교 안전사고	031-820-0781	특수교육과	
▪ 유치원 안전사고	031-820-0594	유아교육과	
▪ 교통 및 통학 중 안전사고	031-249-0697~8	학교안전기획과	
	031-820-0781	특수교육과	특수학교
	031-820-0594	유아교육과	유치원
▪ 외부인 무단 침입 학생 안전사고	031-249-0692	학교안전기획과	그 외 외부인 무단 침입 안전사고 직종별 관련 부서
▪ 물놀이 안전사고	031-249-0691	학교안전기획과	
▪ 자연재난, 화재, 방사능 누출, 승강기 사고	031-249-0683~4	학교안전기획과	교육환경개선과, 시설과
▪ 국지도발 및 테러	031-820-0699~0700	운영지원과	
▪ 꿈의학교 안전사고	031-820-0904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꿈의대학 안전사고	031-820-0913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몽실학교 안전사고	031-820-0598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 학원 및 교습소 안전사고	031-820-0543~6	평생교육복지과	
▪ 산업재해 예방 관리	031-249-0596	학교안전기획과	
▪ 학교안전공제회	031-249-0591,1588-5255	학교안전기획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교육연구시설공제	031-249-0683	학교안전기획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교원배상책임보험	031-249-0245	교원역량개발과	
▪ 당직실(야간 및 공휴일)	031-249-0342	남부	FAX)031-249-0362
	031-820-0514	북부	FAX)031-821-1023

6) 기타 관련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특수, 정보, 유아 등) 또는 학생안전과

7) 체험학습, 학생폭력 사안 보고 체계

▪ **초.중.고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업무담당과, 학생안전과 동시 보고)**

【가평교육지원청 ☎ 주간 031-580-5162, FAX 581-4179, 야간 031-580-5172】

【학생안전과 ☎ 주간 031-820-0790~3, FAX 821-1098, 야간 031-820-0514, 0524】

※ 야간은 당직 책임자가 보고책임자의 임무 수행

※ 현장체험학습 관련 보고해야 하는 사고 유형

1) 인사사고의 경우(인원수 불문, 경미한 사례포함 즉시 유선보고 후 사안보고)

2)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4 지역재난대응 및 응급구조기관 비상연락망

가. 관련 관공서

기관	이름	연락처
국가재난정보센터	자연피해신고 문의	02-2100-0769
국가재난정보센터	특정관리대상시설 문의	02-2100-0494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031-820-0692
교육청	가평교육지원청	031-580-5162 야간)031-580-5172
소방서	가평소방서	031-580-0124
	가평 119 안전센터	031-580-0500~8
경찰서	가평경찰서	031-582-1321
	가평경찰서 설악파출소	031-584-7112
	학교전담경찰관	031-580-1313

▪ **교직원,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구성(교무실에 비치)**

5 안전관련 MOU 체결 기관 현황

가. 교육청 업무 협약 및 협력체계 현황

<2020년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 업무협약 현황>

- **교통안전**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 교육 전담강사 파견 교육 실시, 각종 교통안전 교육자료 보급
  - 교통안전교육 견학시설 지원 등
  ·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등 18개 기관 : 교통안전문화 관련 상호 협력
- **가스안전**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안전 체험프로그램 지원, 가스안전교육 실시(강의, 영상물) 등
- **모바일상담**
  ·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 #1388청소년모바일상담을 통한 상담채널의 다양화, 청소년 근로·지원 교육 실시
- **정신건강**
  · 한림대학교자살과학생정신건강연구소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공유를 통한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
  - 학생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살, 자해(자살시도)학생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동연구
- **학교폭력**
  · 의정부지방법원
  - 소년보호사건 교육적 선도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및 소년통고제 활성화
  · 경기도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 4대악 근절, 학교폭력예방 계도 활동 및 성폭력 예방과 근절 활동 협력
- **시설안전**
  · 한국시설안전공단 : 시설 관리자 교육 강사파견, 기술자료 제공, 관련 프로그램 협력

<(예시)안전교육 7대 표준안 연계 협력체제 구축>

- **생활안전** : 시설안전(시설관리공단), 제품안전(지역소비자원), 식품안전(지방식약청)
  체육/여가활동안전(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수련진흥원)
- **교통안전** : 교통안전공단
- **폭력·신변안전** : 학교폭력(지방경찰청), 성폭력(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정신건강증진센터),
  가정폭력(건강가정지원센터), 유괴/미아사고방지(지방경찰청)
- **약물·사이버 중독** : 약물중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이버중독(스마트쉼센터)
- **재난안전 / 응급처치 :** 지역소방본부 **직업안전** : 지역안전보건공단

6 비상경보발령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분	주 수단	보조 수단	정전 시 수단	비고
접수(외부)	재난위험경보사이렌	유선	가두 방송	설악면사무소
전파(내부)	학교 내 방송	음성 방송, 타종, 호루라기	타종, 메가폰, 육성, 호루라기	교무실

7 교직원의 위기대응 관련 전문성 강화 노력

가.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강화 - 매월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교육 관련 자체 연수 실시(안전담당)

나.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응급처치 요령(심폐소생술) 연수 실시(보건)

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매뉴얼 연수 실시(학교폭력 담당교사)

라. 전교사 안전 관련 직무연수 이수 권장

8 비상시 사고지휘 체계

가. 비상시를 위한 주요 책무자의 역할

1) 교장 :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총괄 -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신속한 업무조정, 업무분장 등

2) **학교안전책임관 : 교감**

학교안전책임관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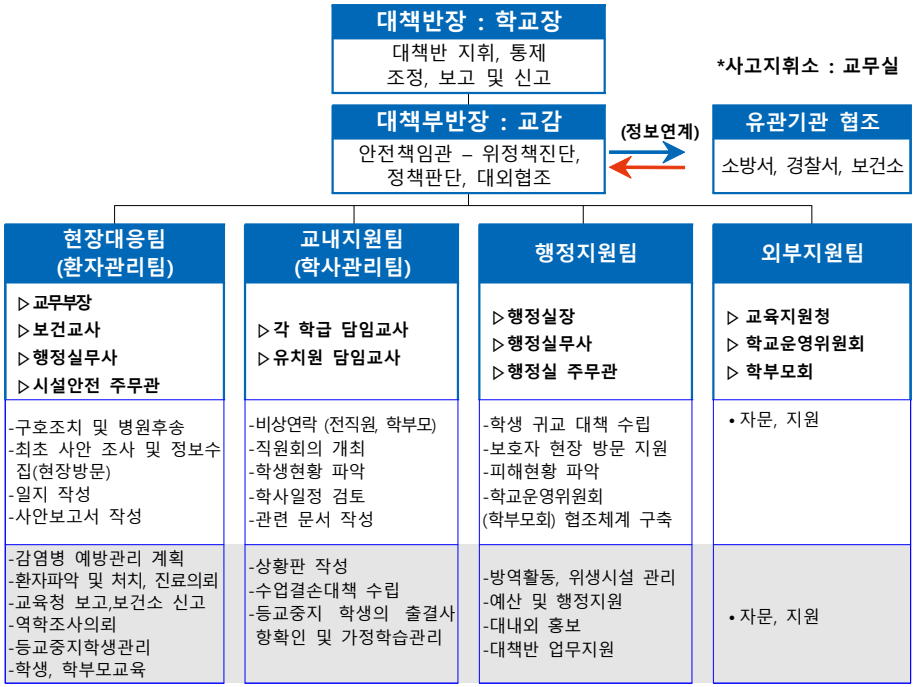
- **학생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 **교원의 안전 역량 함양에 대한 교육 실시**
  (기간제 교사, 과학실험보조교사 등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직원 포함)
-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등**

3) 행정실(행정실장) : 학교의 시설·소방분야 안전, 교육공무직원(학생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직원)의 안전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 관리

4) 안전담당 : 분산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일원화하여 전담 및 시행

나. 학교 비상대책반 조직도 (* 감염병대책기구와 일원화)

※ 교장 부재시 교감(교감 부재시 교무부장이 직무대행)



다. 대책반 직책 및 임무

직 책		임 무
최초 발견자		-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5W1H, 국민안전처 상황전파시스템 가동) - 사고현장 보존(사진 및 동영상,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반장	학교장	- 사고대책반 소집 및 회의주재 - 사안논의 및 사고 처리안 결정 → 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사고 통지 및 협조 요청 - 사안처리에 대한 보호자 불신해소 대책 강구
대책 부반장	교감 (안전 책임관)	- 학교장 부재 시 업무 대리 (현장사고 대책 총괄)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번호 및 기록자 2인 지정)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보 종합 및 분석 - 반별 사안 처리 진행상황 확인(체크리스트 검토) - 유관기관 협조 의뢰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대책부반장 및 반장)
현장 대응반	교무	- 현장대응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교감 부재 시 업무대리(현장사고 대책 총괄) - 학년 피해 상황 종합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및 의견수렴 - 학년 관리(학생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대책 수립) - 사고현장 이동 및 상황파악, 정보수집, 시간대별 상황 보고 - 최초 사안 조사 및 사안보고서 작성

	시설안전 주무관	- 피해상황 종합 - 피해학생 후송병원별 학생인원 파악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장대응반 일지 작성)
	보건교사	- 사안관련 학생 정보제공(상담기록, 교우관계 등) - 보호자 연락 - 학급 학생의 심리적 안정 및 교실 정상화 노력 - 응급조치 및 의료자문 -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처리(피해 학생 및 교직원 등 보상)
교내 지원반	연구	- 교내지원반장(담당자별 세부역할 지시) - 학생 현황 파악 - 직원회의 개최, 비상연락(전직원, 학부모)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학사일정 검토
	학급 담임	- 관련 문서 작성 - 상황실 전화응대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현황판 및 체크리스트, 일지 작성) - 사안 관련 학급 및 현장목격자 등 상담 필요 학생 상담지원 (필요시 외부지원 자문 및 지원 요청)
행정 지원반	행정실장 행정실무사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 교육시설공제회 업무 처리(재산 및 시설) - 행.재정 지원
외부 지원	협력지원 단체	- 전문 외부기관 고유 역할 진행
	학교운영회 위원장, 학부모회장	- 사안 처리에 대한 학교 협조(유언비어 확산 방지) - 사안 관련 학부모 중재 - 학부모 봉사단 조직 및 운영

라. 비상시 교직원 일반 책무

구분	비상시 일반 책무	비고
교장	- 직접 사고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임자에게 권한 위임 가능 (총체적인 책임 수반. 권한 위임을 통해 외부의 협력기관이나 학부모와의 접촉 등에 집중할 수 있음) - 교육청 재난 담당자와 학교의 사고지휘관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역할 수행	
교감 분교장 행정실장	- 본 재난대응계획에 기술된 행동과 절차에 기초하여 재난의 관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전반적으로 지휘 -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 지시 - 재난대응 행동수칙의 실행에 관한 의사결정 - 응급의료로 인해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을 긴급하게 후송하는 수단 마련 - 재난대응기관 전문 인력(경찰서, 소방서)과 협력 - 학교장과 교육청에 재난 상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교사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지도 - 재난대응 프로토콜이 실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개인(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취함 - 재난대응 프로토콜에 따라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을 건물 바깥이나 건물 내부	

	집합 장소로 이동 지도 -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절한 행동 실행 지시 - 대피지역의 학생 인원 확인. 실종 학생 발생 경우, 사고지휘관에게 즉시 보고 - 상의 감독자에 의해 지시사항 실행 - 부상학생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필요 시 응급처치를 실시. 이를 위해 기본소생술과 응급처치에 관한 공인자격의 취득을 위한 훈련에 참여	
보건교사	-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실행 - 응급처치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한 응급처치 실행 감독 - 응급처치와 학교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능직원 / 학생보호 인력	- 건물, 시설, 기물의 손상 정도 파악 후, 보고 - 가스, 수도, 전기의 메인 밸브를 통제함으로써 추가적 위험 방지 - 필요한 경우 건물, 시설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 재난 발생 피해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사용, 보급 지원 - 사고지휘관이 학교 건물 및 시설 피해 상황 정보를 제공받게 함.	
사무직원	-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대응 관련자들과 정보를 주고받는 역할 수행 - 학교의 중요한 기록물과 문서를 안전하게 관리 - 사고지휘관이나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들에 의한 지시사항 실행 - 학교장과 재난관련 정책결정권자들을 지원 -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재난 발생 시, 미디어를 통한 재난방송 청취 - 필요 시, 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 역할 수행	
급식 담당자	-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제공 - 사고지휘관 또는 사고지휘체계 상의 감독자의 지시사항 실행	
학생	- 재난대응훈련 및 실제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 - 재난 대응 시 자신과 타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학습 - 재난 발생 상황을 목격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의 중요성 이해 - 자연적, 기술적, 인적 유해위험요인들 및 이와 관련된 예방, 경감, 대비 조치들에 대한 인지역량 개발 -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 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학부모/ 보호자	- 학교안전, 폭력예방, 재난 대비 프로그램 홍보하고, 이를 지원하는 활동 참여 - 재난에 대한 학교의 대비역량 강화 활동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 재난과 관련하여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정보를 학교에 제공 - 학교에서 교육 또는 훈련 받은 재난대응행동을 가정에서도 연습 - 재난 직면 상황에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과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	

※ 참고: 비상시 대응흐름도



9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근무 현황

구분	본교
성명	미정
근무기간	8:20~9:00, 14:00~16:00 ※ 2021년 기준 운영기간 : 2021.03.02.~2022.02.28. (방학 일부 제외)
활동내용	- 학생 등.하교 교통지도, 취약시간대 학교 내.외 순찰 - 교내 학교폭력 등 각종 비행 등을 예방하고 제지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교주변 및 취약지역 합동 순찰 및 지원 - 학교장과의 상호 협의 시 그밖에 안전 및 학교폭력예방 활동 - 학교폭력 및 비행활동 발견 시 학교장(담당교사)에게 즉시 인계, 체벌 또는 형사고발 등 임의조치 불가
보호인력 금지행위	- 체벌하는 행위 - 강제 이발 행위 - 욕설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신체 접촉 등 과도한 지도로 인해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상.벌점을 부과하는 행위 - 비행학생을 형사고발하는 행위 - 지도과정에서 인지한 학생에 관한 사항(신상 정보 포함)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학생보호인력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위

Ⅲ 예방활동

1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 방침과 절차 및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가. 출입 안전 관리

1) 교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폐쇄, 학생보호인력 및 주무관 상시 순찰로 안전 확보
2) 학생들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외부인(학부모 포함)을 통제한다.
   - 외부인의 출입증(방문증) 패용 안내문 게시 필수
   - 학생들에게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은 외부인 발견 시 신고 교육
3) 학교행사(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시에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나. 방문객의 학교출입 방침과 절차

1) 출입증 교부장소(교무실)에서 일일 방문증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신분증 제출(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통해 갈음)
2) 출입증은 교내에서 반드시 패용
3) 교내에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 및 용무 후에는 『방문증』을 행정실에 반납하도록 한다.
4) 무단으로 학교 내에 진입한 경우, 출입증 교부장소(교무실)로 인계 및 안내
5) 출입 거부
   학교장은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한 경우,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학교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하고 퇴교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단체방문객의 출입

1)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한다.
2) 단체방문객의 경우, 학교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3) 학교 자체 대규모 행사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시간을 정하여 방문증 발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물품 수령 방침과 절차

가. 돌봄교실 식자재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무실(행정실)에서 수령한다.
나. 교직원의 개인, 사적인 물품 대리 수령은 지양한다.
다. 학부모 음식(간식) 반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3 통학안전 지도 및 관리 현황

가. 학교주변 통학로, 교내 차량 통행로 등 위험지도 작성 등 대응 철저

1) 학교 교내외 위험지역 사전 교육 철저(통학로 및 통학방법 조사)
2)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내(학부모총회, 안내장)
3) 등·하교 학생을 위한 교내 외부 차량 진입 금지(학부모총회, 안내장)
4) 등·하교 시간대 교문 앞 장시간 주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 안내

나.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1) 등·하교 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방해 시 적절한 조치
2) 교직원, 학생보호인력 등 학교주변 등·하굣길 안전지도

다. 시설 공사 시 안전관리

1) 시공업체에 건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공사와 필요한 경우(소규모공사) 착공 후 7일 이내에 공사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안전을 위한 상호협조체계 등 학교 실정이 고려된「학교안전관리 계획서」요청
2)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공사 착공 시 학교장은 공사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일지를 관리하고, 각 시공사는 작업 계획 시행 전 제출

4 마스터키(비상열쇠) 관리 방침

가.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마스터키(비상열쇠) 상시 비치
나.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마스터키(비상열쇠) 점검 및 캐비넷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

5 교내 차량통행 및 주차 관리 방침

가.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은 학교 정문 밖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장애인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차량 진입을 금지한다.

6 보관구역 관리 방침(식료품, 유해물질, 장비, 약품 등)

가. 보건실 약품관리

1)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하되 보관용기, 보관방법 등을 준수한다.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2) 해독성 약품은 잠금장치를 하고 주의 표시를 해둔다.
3)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4) 의약품은 다치거나 아픈 학생에게 반드시 보건담당자가 직접 투약한다.
5) 의약품 사용은 응급처치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과다한 사용은 줄인다.
6)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요양, 투약, 치료, 병원의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항을 보건일지에 기록한다.

나. 유해물질 및 과학실 장비(약품) 관리 방침

1) 위험한 물질의 배치
- 휘발성 액체는 태양광선, 전기 스위치, 열기구 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관한다.
- 유독성 물질은 마개를 잠근 채로 별도로 분리하여 잠금장치 안에 보관한다.

2) 라벨링 및 위험 표시
- 장비의 보관 장소와 각각의 물건들에 대한 라벨 작업 수행
- 지도 교사는 약품을 학생들이 그 시간에 사용할 만큼만 덜어주고 약품병 겉에 붙여진 라벨에 이름이 분명치 않거나 정체불명의 약품인 경우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액체는 반드시 장비나 물질의 근처에서 떨어진 별개의 보관 장소에 보관 한다.

3) 과학실험 폐수 및 폐시약 처리
- 실험실 폐수, 폐시약 처리·보관 방법
  ○ 폐수통 준비 : 20L 크기의 용기를 준비하여,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폐수통"이라고 표기
  ○ 실험 후 폐수 수집 요령

• 발생 폐수를 한 개의 통에 함께 보관한다.
  - 실험실 폐수는 대부분이 원액이 아닌, 희석된 폐수이므로 폐수 종류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한통에 함께 보관한다. 만일 원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물로 어느 정도 희석시켜 폐수통에 버린다.
• 폐수를 소량씩 천천히 폐수통에 붓는다.
  - 폐수를 폐수통에 버릴 때는 이미 폐수통에 있는 다른 폐수와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량씩 천천히 붓는다.
• 실험에 사용한 초자기구를 1~2회 정도 세척한 물도 폐수통에 버린다.
  - 실험에 사용한 비커 등의 실험기구(초자기구)는 시약이 묻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척 시 세척한 물도 폐수통에 모은다.

○ 시약병 처리 방법

• 유리로 된 시약병
  - 시약이 조금 남아있는 것은 물로 희석을 하여 폐수통에 버리고, 빈 시약병은 여러 번 세척하고 세척한 물은 폐수통에 버리고, 세척한 병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
• 플라스틱으로 된 시약병
  - 유리시약병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 폐수 보관

• 실험실 폐수는 반드시 폐수통에 보관한다.
• 폐수통은 분기별 위탁처리 될 때까지 지도교사의 책임 하에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

○ 폐시약 보관 : 학생들의 손이 닿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한다.

7 교무실과 각 교실 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내 용
정전전	방송 시설	각 교실로 전체 방송 가능
	전화(인터폰)	교무실에 인터폰 번호를 비치 및 관리
정전후	인편연락	* 1단계 : 교장, 교감, 행정실장 연락 * 2단계 - 교무실→각 학년/유치원 연락 - 행정실→소속 교직원

8 비상탈출구, 2차탈출구(창문)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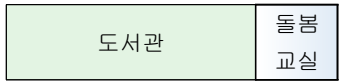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비상 탈출구	현관 출입문, 옥상문 등
2차 탈출구	건물 1층 유리창문 등

가. 학교 비상대책반 중 현장대응반은 건물 1층 유리 창문, 옥상문 등 비상시 2차 탈출구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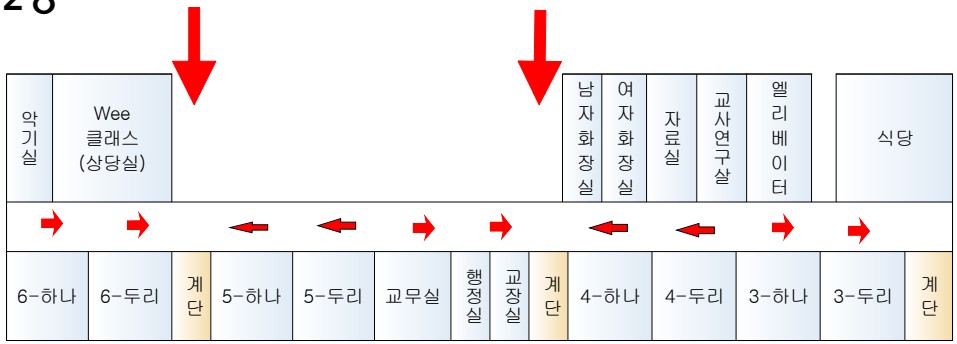
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공 훈련 시 비상탈출구와 2차 탈출구를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9 비상대피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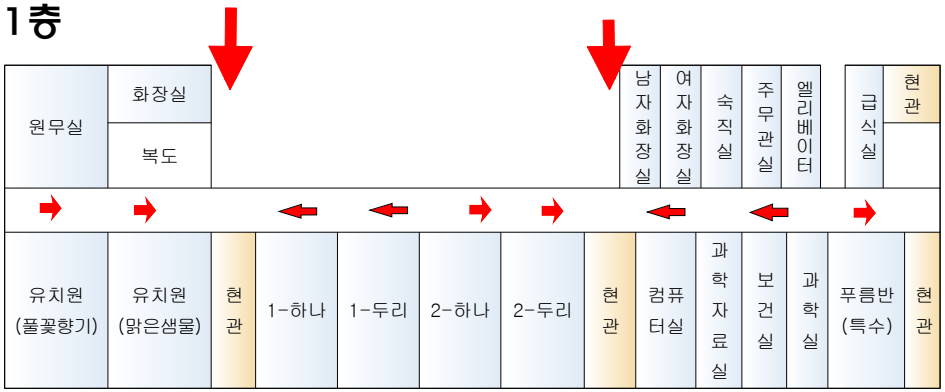
3층



2층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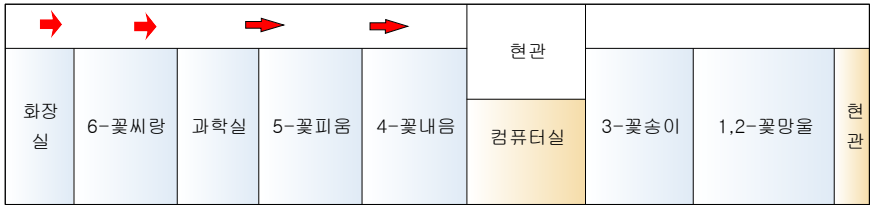


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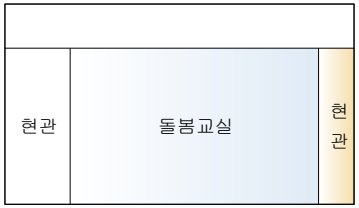
복도	화장실
	돌봄교실
누리반 사무실	누리반

미원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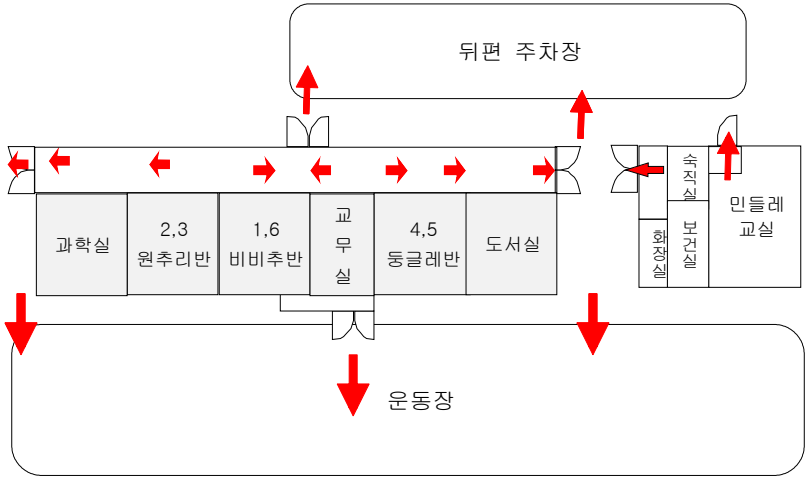
1층



별관



미원초등학교 위곡분교장



미원초등학교 장락분교장

10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안전 관리

가.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점검
2) 학생의 교문 이탈 가능성에 대한 대응시스템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및 교내 이동시 안전 확보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1) 성교육 및 위기(위험) 대응을 위한 자기보호 교육 실시
2)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3)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4)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차별금지 학부모 교육 실시

다. 학교는 해당학생과 교직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등을 운영

- 재난 발생 시 우선적인 구조와 재난대응을 위하여 특수교사가 학생을 보호·인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우선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특수교사가 인솔하고 나머지 학생은 통합학급의 담임교사가 인솔

라. 장애별 장애유형에 따른 재난대응 지도법

장애영역	특성	고려사항
자폐성 장애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관성 유지하려 함 과제의 차별화 필요하며 또래지원 전략이 효과적임	과제의 구조 및 예측 가능성이 중요함 비상 시 절차에 따른 반복된 훈련이 필요 학생들의 행동, 감정에 혼란스럽지 않은 단서 사용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동안 차별화된 수행과 환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에 대한 훈련 필요
시각장애 (저시력, 맹)	학생이 부분 또는 완전한 시력 상실의 경우 색상, 형태, 움직임 등을 보거나 보지 못할 수 있음	위기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못한 시설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설을 인지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가청 경봉들을 보완하는 섬광, 진동 호출기 등(점자 표지판, CD, 소리로 인지할 수 있는 간판)을 사용해야 함
청각장애	청각에 심한 손상을 가짐 보청기 등의 보장구 사용에 의해 청력이 보완되나 경보를 듣지 못할 수 있음	대체 통신 시스템 사용
중복장애 (청각, 시각)	듣는 것과 보는 것 둘 다 심각한 손상을 가짐 제한된 시력 또는 청력을 가지고 있음	시설을 인지하고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야 함 안전한 장소와 위치로 이동 시 지원인력이 필요 경보음을 보완하는 섬광, 진동 호출기 등(점자 표지판, CD, 소리로 인지 할 수 있는 간판)을 사용해야 함
정서 및 행동장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늦음 주의력 및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이 부족함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함 자기 관리 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지적장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데 늦음 주의력 및 선택적 주의집중 능력이 부족함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함 학생의 반응을 자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함 비상 시 반복 훈련이 필요함
지체장애	움직임에 제한이 있음 이동하기 위하여 목발이나 휠체어 등을 사용함	학생이 안전한 지대로 접근하여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휠체어, 목발 보호 장치 같은 장비가 필요함

11 외부인에 대한 시설 개방 현황 및 안전관리

가. 개방 현황

1)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규 교과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이후(17:00~20:00) 운동장을 개방한다.
2) 학교폭력, 각종 비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직자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3) 지역 관련 기관(경찰서)과 연계하여 안전사고 및 청소년 비행을 예방한다.

나. 안전 관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용가능 시간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 중이라 할지라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거나,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학습 분위기를 저해한 때
2) 이용자는 학교 시설물을 오염.훼손해서는 안 되며, 해당 시에는 즉시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3) 이용자는 학교 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흡연, 탈의 등의 교육적 저해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이용자는 학교 내에서 가열 및 조리할 수 없고, 허가받은 장소 외의 출입을 금한다.
5) 이용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이용자는 본교의 관리자나 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안전한 학교풍토의 조성

가. 아침시간 등을 활용하여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실시

구분	운 영 방 법
학생	· 조.종례시간 및 자투리시간 등을 활용 매일 5분 안전교육 실시 · 매일 관련 교과시간을 이용한 5분 안전교육 실시 등
교직원	· 교직원 회의 시 안전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학부모	· 학부모회의 시 안전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안전교육 실시

나. 안전주간 운영(5월)으로 안전문화 조성

13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과, 특별활동, 창체 활동을 통한 안전 교육 관련 교육 철저

1) 교과 교육과 안전 교육 연계 지도(7대 안전교육 학년 당 최소 51차시 확보)
2) 신입생 및 전입생에 대한 학교 시설, 주변 시설의 위험 요소 등 안전교육 실시

3) 체육대회, 입학식 등 각종 행사시 계획단계에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 외부인(학부모)이 참석하는 행사 시
- 시작 전 1분 안전 교육 권장
- 안전교육 내용: 위기발생시 대피로, 소화기의 위치, 안전관련 간단한 지식 등 홍보

4) 각종 안전 교육 관련 시청각 자료 활용(우수**안전교육 콘텐츠**(www.schoolsafe.kr) **활용)**

나. 실험·실습 교육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실험실 안전 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kisco.or.kr)참조

1) 실험 . 실습실 안전관리 담당자(과학전담, 과학담당) 지정
2) 안전수칙 게시, 안전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3) 실험. 실습실 안전보호 체계 강구 및 실습 기자재 수리 지원
   · 안전시설 및 가이드라인 설치
   ·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시약 처리 (연 2회)
   · 노후 실험기자재 교체 및 수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4) 실험 . 실습 담당교사 안전관리 연수
   · 과학실험, 실습 관련 계열별 산업안전 매뉴얼 보급 및 연수

다. 생활 속 안전교육 강화

◇ 교통사고 안전교육 강화

1)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을 반영하여 지도
2) 학교 등.하교 교통 상황을 반영한 체험, 실습 중심의 교통안전 교육 실시
   - 학교는 통학로, 교내 차량 통행로, 통학버스 이용 등 위험지도 작성 등 대응 철저
3) 교직원, 학부모 등 차량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내
4) 등·하교 학생을 위한 교문 바로 앞 정차 금지 및 안전한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학부모에게 지속적 안내
5) 안전 관련 유관 기관 연계 활동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안전교육 실시
6) 교직원, 경찰 등 학교주변 등·하굣길 안전지도 강화

라. 체험학습 또는 야외수련활동에서의 사전 안전 교육 강화

학생안전과『안전하고 교육적인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적용

1) 원칙: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테마형 체험학습(수학여행) 추진
   - 준비 ~ 평가까지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는 프로젝트형 모델 권장
   - (예시) 7대 안전교육과 연계, 체험학습 전·중·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2) (대규모 수학여행) 학생·학부모 동의 절차,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등 반드시 수학여행 지원단 컨설팅 후 실시

< 대규모 주제별 체험학습 운영기준 >

- 도교육청(학생안전과)에서 제시한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우선 적용(2016.1)
-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 (50명당 1인 이상, 100명 초과 시 초과 50명당 1인 이상)
- 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대규모 운영에 따른 안전대책 및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성 검토)

3) 견학 장소 및 야영관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4) 이동수단별 안전교육 철저

- 차량(전세버스 등)의 운전자 적격여부, 차량 적합여부 사전 점검 및 안전운행목록 전달
5) 담당 지도교사 임장지도 철저
   - 야외 단체 활동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교사와 사제동행으로 실시
   - 학급별 비상배낭(가방) 상시 휴대 (구급약품, 비상연락망, 매뉴얼, 무전기 등)
6) 수련활동은 허가.등록된 시설 및 국·공립시설에서 실시
   - 목적, 적정 이동 거리, 학생의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수련시설을 결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확인 후 이용

◇ 체험학습 학생안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시 ◇

가) '나의 안전지수' 를 통한 자기점검 실시
나) 토의·토론 기반형 체험학습 안전 교육 실시
· 이동 중, 체험 현장에서 각종 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토의 토론
· 시나리오 작성하기(교통편, 동선, 방문지, 위기상황 설정 등)
· 퀴즈, 일문일답, 게임을 통한 위기 시 대응방안 역할 분담 익히기(신고자, 구조자, 응급처치자 등)
· 역할극 등을 활용한 비상시 대처법 익히기(화재발생시 대처법, 비상탈출 방법, 신고하는 요령 등)

7) 안전조끼 예산을 확보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시 활용.

마. 자연재난(대기오염 포함) 발생 시 안전교육 강화

1) 대기오염(황사, 미세먼지, 폭염 등) 재난발생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발령 단계별 행동요령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신속하게 실시
2) 학생 참여형,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훈련 교육 실시
   - 재난대피훈련 연 4차시 이상 교육
   - 연 2회 이상의 화재 및 지진 대피 훈련 실시
   - 기타 다양한 자연재난에 대한 상황별 대응교육 강화
3) 학생 참여형, 학교 맞춤형 재난대응훈련 교육 실시 (7대안전교육부분에서 연 6시간 확보)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 실제훈련 실시
   - 이론에서 탈피한 몸으로 체험하는 실질적 훈련 (소화기 사용법, 대피호 위치 확인 등)
   - 안전생활 습관화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 학생 참여 강화
   - 상황별 재난 단계별 교직원 상황 판단 및 보고, 조치능력 강화
   - 학교장 중심의 교직원 상황판단 회의와 실제훈련 병행 추진

바. 학교 안전 교육 세부 추진 계획

1) 시기별 추진 개요

추진 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학교안전위험성진단		1회	교직원		안전,행정실
2022 학교안전계획 작성		1회	교직원	2월	안전
7대 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1회, 상시	전교생	2월, 수시	담임 안전
각종 안전교육 세부계획 수립 - 나침반 안전교육 - 안전점검의 날 운영		 1회 1회	 전교생 교직원	 3월 3월	 안전 행정실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활용 교육		학기중	전교생	3월~2월	담임, 안전
매월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매월	교직원	매월	행정실
안전교육 교육과정 반영		상시	전교생	3월~2월	안전, 담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안전주간 운영 (안전한국훈련주간으로 대체) -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학기중 1회	전교생	3월~2월 5월	담임 안전
한국안전훈련 주간 재난 교육 철저 (실제 훈련 실시)		1회	전교생	5월	안전, 행정실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 교육과정내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찾아가는 안전체험 버스 신청) - 학교 자체 자전거 안전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자전거 면허증 교부		1회	전교생	5월	안전
재난대피 훈련 실시 - 지진대피훈련 2회 - 소방훈련 2회(1학기-소방서합동, 2학기-학교자체) - 민방공 훈련 학기당 1회(2회)		2회 2회 2회	1~6학년	*미정 6월,10월 *미정	안전 행정실 안전
CCTV 활용	CCTV 설비의 지속적인 관리	수시	전교생 교직원	3월~2월	행정실
심폐소생술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1회	전교생	3월~2월	보건
교직원 연수	2022 학교안전계획 교직원 연수 교육활동참여자 안전교육 교직원 안전교육 (3년 15시간 이상) 3년 미만 교직원 (6개월에 2시간이상) 성폭력 예방 및 성 관련 연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연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1회 1회 수시 2회 3회 2회 1회	교직원	3월 3월 수시 3월, 9월 6월,12월 5월,10월 10월	안전 안전 *직무연수 안전 보건 보건 보건

2) 7대 안전교육 세부 내용 및 반영 시수

내 용		반영 요구 시수 (교과나 창체 연계)	관련 법령	비고 (시간)
7대 안전교육 (51차시 이상 운영)	생활안전	체육 및 여가활동안전		6
		시설안전		
		제품안전	학교급식법 및 식생활교육지원법 등 (매년 2회 이상)	2
		실험실습안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	4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2개월에 1회 이상)	11
		오토바이안전		
		자동차안전		
		대중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및 신변안전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 (학기별 1회 이상)	8
		성폭력	교육부 지침(2015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 *보건교사 교육	
		자살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학기별 1회 이상)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1항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예방교육포함	
	약물 및 사이버중독	마약류 폐해 및 예방	학교보건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3개월에 1회 이상)	10
		흡연 폐해 및 예방		
		음주 폐해 및 예방		
		고카페인 식품 폐해 및 예방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매년 1회 이상)	
		스마트폰 중독 예방		
	재난안전	화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1항 (6개월에 1회 이상) * 지진대피-2회 이상	6
		사회재난		
		자연재난		
	응급처치	응급처치의 이해	학교보건법 2시간이상의 실습	2
		심폐소생술		
		상황별응급처치		
	직업안전	직업안전의 예방 및 관리		2
		직업안전의식		
총계				51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3-12월 동안 학교계획에 의거 5분 단위 안전교육 실시	◆아동복지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Ⅳ 대비활동

1 재난대응훈련 계획의 수립

중점활동	추진 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재난대비 훈련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 -학년, 상황에 맞는 체험형 재난 대응 훈련	1회	1~6학년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안전 담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계획	-지진 및 화재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대피 훈련 -학년, 학생 상황에 맞는 놀이형 재난 대응 훈련 -실제적인 기능 점검 및 안전 진단 훈련 -나. 침. 반 5분 안전교육 관련 훈련	1회	유치원 1~6학년 교직원	5월 16일 전후	행정실 안전 담임
민방공 대피훈련	-민방위의 날 일정에 맞추어 재난대피 훈련	2회	유치원 1~6학년 교직원	학기별 1회	행정실
화재대피 훈련	-화재 대피 및 대응 훈련 (1회 이상 소방기관과 연계하여 실시)	2회	유치원 1~6학년 교직원	학기별 1회	행정실

*** 지진대피 훈련 연 2회 이상 실시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훈련 실시**

2 배포와 실제 훈련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배포 및 실제 훈련 시 별도계획 수립

- 구체적 위험상황 제시와 훈련을 통해 대처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프로그램 운영
  - 전교생 대피훈련 연 4회 실시 (민방위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포함)
  - 학생자치회 주관 안전실천 캠페인 운영
  - 소화기 사용법, 대피호 위치 확인 등 주입식 훈련을 탈피, 체험 위주의 다양한 훈련 방법 적용

3 비상배낭의 마련과 관리

가. 대피를 요하는 재난과 학교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실에 비상배낭을 상시 비치한다.

나. 행정실장은 분기별로 내용물을 점검.보완하고, 캐비넷 보관 등 보안.관리 철저히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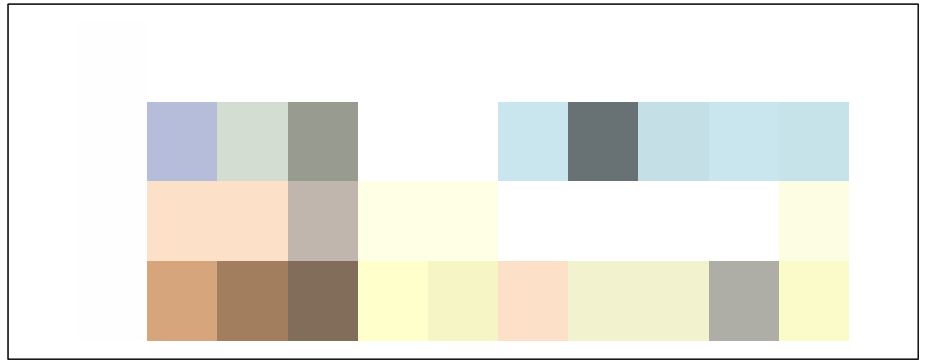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 화재경보기 작동법 ○ 스프링클러 작동법 ○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 학생 대피장소 ○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 지압붕대 ○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다. 각 학급별 비상배낭 상시 비치(현장체험학습 시에도 활용 가능)

- (예시) 구명용 로프(약 10m), 손전등, 목장갑, 비상약품 등

Ⅴ 대응절차와 행동수칙

1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현장체험학습 포함] 재난 발생 시 일반적 대응절차



가.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은 지역사회 전체에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학생의 통학로 유실, 가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을 가정하여 대응

2 비상 커뮤니케이션의 실행 및 대응절차

가. 학교는 발생한 재난 또는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교직원 명단과 연락처, 재난대응, 응급의료, 관계기관 등과의 비상연락망(교육청 재난안전관리체계와의 연계 포함), 시설 및 물품공급업체 비상연락처 등에 따른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한다.

나. 비상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 유선전화 :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학부모들의 정보요청에 응대하기 위해 학교 전화번호 중 하나(또는 그 이상의 회선)를 핫라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휴대전화 :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으로, 교직원들이 이동하는 중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3 장애학생 지원

특별배려학생 현황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체장애	시각.청각장애	발달지체	환자(천식, 알레르기 등)	학습장애
	1	0	0	0	1	0	1
	2022년 1월 기준 (완전통합학생 포함)						

4 Drop-cover-hold(몸을 낮추고, 머리를 감싼 자세 유지)

가. 목적

Drop-Cover-Hold는 사전경고 없이 갑작스러운 폭발, 건물 붕괴, 태풍, 지진 등에 의해 교실 천장과 벽 등에 놓인 물건들이 떨어지거나, 교실 외부에서 날아오는 파편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이다.

나. 역할

지정된 교직원들은 이러한 절차의 개발, 실행, 평가에 참여한다.

다. 절차

1) 실내 절차

실내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바닥으로 몸을 낮춘다.
- 튼튼한 테이블, 책상 또는 그 밖의 가구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한다. 만일 자신이 있는 곳에 이를 위한 적합한 가구가 없다면, 자신의 팔로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Drop-Cover-Hold를 그만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까지 테이블 밑에서 자세를 유지한다.
- 교직원들은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지시가 있다거나 또는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했을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 교직원과 학생은 대피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2) 실외 절차

실외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건물, 가로수, 전신주 등과 떨어진 장소로 이동한다.
- 땅바닥을 향해 몸을 낮춘다.
- 자신의 팔을 이용하여 얼굴과 머리를 보호한다.
- 교직원은 학교장/학교사고지휘관의 지시가 있다거나 또는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할 때, 학생들을 사전에 지정해 놓은 장소로 대피시킨다.

3) 차량 이동 중의 절차

이동 중인 차량에 있는 운전기사/교직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여서 정차시킨다.
- 모든 학생/교직원들에게 차량 안에 머물도록 지시한다.
-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할 때 조심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량 밖으로 대피한다.

5 대피(evacuation)

가. 목적

대피는 화재, 폭발, 불법침입자, 위험물질 유출 등으로 인해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이 운동장, 체육관 또는 학교 밖의 안전지대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행되는 절차이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필요에 따라 112 포함)에 즉시 전화를 걸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있음을 알린다(상황에 따라 통화담당자를 지정한다).
- 교육청 담당자에게 학생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린다.
- 화재경보기, PA시스템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물 전체 또는

건물 내 특정지역으로부터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린다. 경보방송(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은 즉시, 학생들을 각자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대피시 출석부를 지참하고 지정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학생인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비상상황의 형태에 따라 대피경로를 결정한다.
- 비상상황이 발생한 장소와 형태에 따른 대피경로의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무전기 또는 핸드폰 등을 통해 대피절차를 지원할 교직원을 지정한다.
-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지시사항을 업데이트하거나 추가한다.
-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경우 벨, 무전기, PA 시스템, 전령 또는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린다.

2) 교사

- 지정된 비상대피로 또는 학교장/안전책임관이 지시한 경로를 따라 건물 바깥으로 나가도록 지시한다. 건물 각 층의 평면도에 표시된 대피계획도는 각 교실 내부의 전등스위치 옆에 부착해 놓아야 한다.
- 1차 비상대피로가 막혀있다거나 위험한 상황인 경우에 2차 대피로를 이용한다. 비상상황과 이로 인한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 학교장/사고지휘관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한 대피경로와 건물 내의 대피장소를 선택한다.
- 필요시 특별배려자의 대피를 도와주기로 지정된 학생에게 이들의 대피행동을 도와줄 것을 지시한다.
- 교실을 떠날 때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문을 닫고 불을 끈다.
- 학생 또는 교직원의 소지품들로 인해 대피행동을 멈춰서는 안 된다.
- 출석부, 전화번호부, 교실 비상배낭(Go-Kit), 그 밖의 비상용품을 지참하고 대피한다.
-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동안 화장실, 복도, 편의시설 등을 체크한다.
- 지정된 건물 밖의 대피지역으로 이동한다
- 건물 밖 대피지역이나 건물 내부의 대피지역에 도착하면 즉시 부상자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 대피장소에 도착한 후 학생 수를 확인하고 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있는 경우 즉시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피지역에서 대기한다.

3) 행정직원

- 방문자 기록지와 교외 출입허가자 기록지를 지참하여 대피지역으로 이동한다.
- 교사들로부터 인원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부상학생과 부상 교직원에 관한 사항을 알린다.

6 역대피(reverse evacuation, 실내대피)

가. 목적

역대피(Reverse Evacuation)는 학교 건물 바깥보다 건물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상황, 즉 악천후, 지역사회에서의 비상상황 발생, 조직범죄활동 또는 학교 밖에서의 위험물질 유출 등과 같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실행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역대피 명령을 내린다. PA시스템, 메가폰, 무전기, 전화,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집합시킨다.
· 교육청 관계자에게 상황을 통보한다.
· 119 또는 112에 신고한다.
· 라디오,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교직원을 지명한다.
· 외부 문과 창을 닫고 잠근다.
· 재난안전담당자 또는 안전담당자와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학교안전사고가 전개되는 상황 변화에 따라 Drop-Cover-Hold 또는 대피소 피난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협의한다.

2) 교사/직원

· 가장 가까운 건물 입구를 통해 즉시 학생들을 교실 또는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학생이나 교직원 어느 누구도 건물 밖에 있지 않도록 한다.
· 모든 외부 문과 창을 닫고 잠그도록 지시한다.
· 만일 건물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한 경우, 건물 밖에 있는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되어 지정된 학교 내 또는 학교 밖 장소로 이동하여 집합하도록 지시한다.
·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에 대한 출석을 확인하고, 실종학생이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공공안전담당자(소방관, 재난안전전문가 등)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린다.
· 위협요인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학교의 주출입구를 감시한다.

7 대피소 피난(shelter-in-place)

가. 목적

대피소 피난(shelter-in-place)절차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학생, 직원, 시민 등이 학교 내에 설치된 대피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PA시스템, 무전기, 전화기, 메가폰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주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대피소 피난절차를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정된 대피장소와 안전지대로 이동하십시오. 건물 밖에 있는 모든 직원과 학생들은 즉시 건물 안으로 대피 하십시오."

·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역대피 명령을 내린다. PA시스템, 메가폰, 무전기, 전화, 메신저를 활용하여 학생과 교직원들을 건물 안으로 집합시킨다.
· 모든 외부 문과 창을 닫고 잠그도록 지시한다.
· 필요하다면 외부의 공기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물의 냉난방과 환기시스템을 차단할 것을 지시한다.
· 교육청에 학교가 대피소 피난을 실시하였음을 통보한다.
· 라디오, 인터넷, 기타 매체를 통해 대피소 피난을 유발시킨 학교안전사고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교직원을 지명한다.

· 재난안전요원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이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실시한다.
·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교사/직원

· 학생들을 지정된 장소 즉 창문이 없는 방, 지하실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필요하다면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어 자세를 낮추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도록 지시하여 날아올 수 있는 파편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 만일 건물 바깥에 있는 경우라면 학생들에게 학교 건물 내부의 안전한 지역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대피장소로 들어갈 것을 지시한다.
· 돌풍이나 태풍 등의 악천후로 인해 건물이나 대피소 안으로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계곡의 나무나 전봇대 등이 없는 배수로나 낮은 장소로 이동해 쪼그리고 앉거나 누워있도록 한다.
· 건물 내부로 이동시 유해한 화학연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연기가 닿지 않는 장소로 학생들을 이동시킨다.
·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긴급구조대로부터 바깥이 안전해졌으니 대피소에서 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모든 학생들이 대피소 안에 머물도록 지시한다.

3) 시설관리자

·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응급구조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시설을 잠근다.
· 난방.환기.냉방 등의 공기순환시스템을 잠그라는 지시가 있을 때 이를 실행한다.
·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피소가 마련된 건물의 현관에 '대피소'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카드를 부착한다. 그러나 흉기난동, 불법침입,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학교 내 건물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피소' 안내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8 락다운(Lockdown)

가. 목적

락다운은 흉기 난동이나 불법침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간장벽(time barrier)을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의 물리적 대응방안으로 독립형 방어전략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안전한 장소를 확보한 후, 그곳으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문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대피방안 또는 필요한 대응책을 준비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P/A시스템, 무전기, 전화 또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달한다.

> "주의를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지금 락다운을 실시합니다."

· 112 신고자를 지정하고, 그는 학교명과 주소, 비상상황을 설명하고 학교가 락다운을 실시하였다는 사실과 (만일 파악하고 있다면) 불법침입자의 인상착의와 소지한 흉기, 학교의 사건지휘소 위치 등을 전달한다. 업데이트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신고자가 전화통화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 건물 외부에 있는 교직원들과 운동장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즉시 학교 밖 집합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하고,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이들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체험학습 후 돌아오는 버스가 있는 경우) 버스의 배차담당자 또는 운전기사를 관리하는 용역

회사에 학교로의 운행을 중단하고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것을 통보한다.
· 교육청에 락다운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린다.

2) 교사

· 복도와 화장실에 있는 학생들을 자신의 교실로 들어오도록 하여 모든 학생들이 교실로 들어가도록 한다.
· 문을 잠근다(복도측 창에 설치된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려서 복도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한다).
· 문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커다란 물건들을 옮겨 놓는다. 이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의자 등의 물건들을 활용한다.
· 출석을 확인하여 실종된 학생 또는 자신의 교실에 피신 중인 학생이나 방문객에 대한 사항을 학교 사고지휘관에게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흉기소지자나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이들로부터 학생들이 재빠르게 뛰어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 교직원과 학생들은 큰소리를 지른다거나 흉기소지자/불법침입자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향해 물건을 던짐으로써 이들이 흉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준비한다.
· 학교 사고지휘관으로부터 위협상황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전달받는다거나 창문 등을 통한 안전한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전까지 아무도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3) 행정직원

· 응급구조기관 등과 학교 안전책임관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리며 전화기 옆에 대기한다.
· PA시스템, 전화, 컴퓨터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교실 상황을 원격으로 확인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의 지휘소 설치를 지원한다.

4) 시설관리자

· 물류차량의 출입문을 포함하여 모든 출입문을 닫고 잠근다.
· 물류차량기사, 작업자, 용역직원 등이 건물 내의 안전한 장소에서 문을 잠그고 있도록 지시한다.
락다운이 실시되는 동안 건물 외부에 일부 학생과 교직원이 존재하는 경우, 교사 또는 다른 교직원은 이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다.

9 흉기 난동

가. 목적

흉기를 사용한 교내 범죄사고의 발생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이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교직원에게 112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시받은 교직원은 학교명과 주소,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발생한 비상상황의 성격, 불법침입자의 수와 용모(생김새와 복장 등), 소지한 흉기의 종류, 이들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소, 학교가 취한 행동 그리고 현재 학교의 보안요원들이 위치한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신고자는 112와의 통화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사건지휘소인 행정실(또는 교무실)에 대한 경비를 실시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직원과 학생들의 위치, 학교와 건물의 평면도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학교비상운영시스템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가용할 수 있는 문서와 물품 등을 준비해 놓는다.
만일 사건이 행정실(교무실)에서 일어나는 경우 사건지휘소로 사용할 별도의 장소를 지정한다.
· 행정직원들로 하여금 인터폰이나 무선전화기 등을 통해 교사들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건 발생을 통지하고 대응을 요청한다.
· 교사와 학생들을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필요시 학교 밖의 재결집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것을 지시한다.
·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학교로 들어오고자 하는 방문객과 차량의 진입을 막도록 지시한다.
· 학교를 향해 오고 있는 모든 버스(체험학습을 위한 버스)들은 운행경로를 변경하여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가도록 지시한다.

2) 교사/직원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경찰관과 같은 사고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락다운을 실행한다.
· 만일 무단불법침입자를 학교에서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라면, 112에 신고한 후 이러한 사실을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통보하여 락다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실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신의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자신의 교실에 피신해 들어온 사람들의 수를 확인한다.
· 건물 밖으로의 대피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닌 경우,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교실 내에서 락다운 상황을 유지한다.
· 만일 불법침입자가 교실에 들어온 상황인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 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위협에 저항하기 위한 어떤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 만일 불법침입자가 교실에서 흉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흉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교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책, 컴퓨터, 전화기, 가방 등을 던져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거나 침입자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실행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교실 밖의 다른 장소로 도망가라고 말한다.

다. 그 밖의 절차

· 흉기난동자/불법침입자의 행동이 진압된 후, 학교장/안전책임관은 사건현장지휘관(경찰관)과 협의하여 방송을 통해 대피 실행과 가족복귀를 위한 장소로 재결집할 것을 안내한다.
· 교직원 또는 학생이 부상당한 경우 응급구조요원들은 현장을 통제하고 의료처치 등의 적절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대피학생들이 모여 있는 재집결 장소의 지휘관에게 가족복귀 절차의 실행을 통보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재집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버스 등의 교통편을 요청한다.
· 교사들은 지정된 대피경로를 이용하여 사전에 배정된 집합장소로 학생들을 대피시킨 후, 학생의 출석을 확인하고 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위기대응팀의 활동 개시와 정신건강 치료절차의 시작을 지시하고, 정신건강서비스기관에게 상담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통보한다.
· 학교 안전책임관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듣는다.
· 학교장과 교육장(또는 교육장이 지명한 자)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가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논의한 후, 이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공유한다.

10 무단침입/인질극

가. 목적

운동장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불법침입자나 거동수상자를 발견하였다거나 인질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학교 재산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모든 교직원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사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경찰관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른다.
· 만일 교직원이 무단침입자에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 다른 동료 교직원들과 동행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신이 누구임을 밝힌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왜 방문했는지 묻는다.
· 무단침입자에게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비실에서 방문일지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이들과 동행하여 경비실로 이동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의 학교 방문 목적이 불법적인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들에게 학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한다.
·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동행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학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무단침입자가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학교에 계속 있게 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 만일 무단침입자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이들과 맞닥뜨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무단침입자들과 만난 당시의 상황(이들을 발견한 장소, 인상착의, 소지한 무기.흉기 또는 소지품 등)을 파악한다.
·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상황에서 무단침입자와 시각적 접촉을 유지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 또는 경찰(112)에게 학교에 무단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무단침입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한다(되도록이면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무단침입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한다).
· 학교장/사고지휘관은 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락다운을 발령한다거나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실행한다.
· 만일 인질극을 벌이는 자가 당신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다.

※ 학교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인질이 된 경우

·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단 인질범의 지시에 따르거나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 인질이 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공포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학생들이 있는 경우 침착하게 행동하도록 한다.
· 가능한 한 인질범들에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인질범과 언쟁을 벌이지 않는다.

2) 학교장/안전책임관

· 즉시 112에 신고한다. 인질범의 수와 인상착의, 인질극이 벌어진 정확한 장소, 학교가 취한 조치(락다운 또는 폭발물을 소지한 인질범에 의한 대피) 등과 같은 상세한 상황을 알려준다. 인질협상팀에게 자신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 락다운 또는 상황에 적합한 필요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건물 바깥에 위치한 교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학생들을 학교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키도록 지시한다.
·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격리시키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인질범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교육장에게 인질극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시킨다.
· 인질범과의 협상을 위한 팀이 도착하는 경우 이들에게 현장에 대한 지휘권을 넘긴다.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3) 교사/직원

· 교직원은 락다운 또는 지시가 내려진 절차를 실행한다. 만일 학교 건물 밖에 있는 경우 학생들을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 후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사람들은 경찰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11 폭발사고

가. 목적

보일러 과열, 가스누출, 화학(위험)물질의 유출, 사람에 의한 폭발물 설치, 자연재해 등의 결과로 폭발사고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학교가 취해야 할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대피 프로토콜
·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
· 응급의료 프로토콜
· 정신건강치료 프로토콜

폭발을 목격한 교직원, 학생 또는 방문객 등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후 폭발사고가 발생했음을 학교장과 119에 신고한다. 폭발사고 현장지휘관(소방관/경찰관)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들에게 넘기고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한다. 또한 소방당국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에 전화를 걸어 폭발사고로 인해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폭발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지점,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발생 상황, 건물 대피 현황과 사고지휘소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대피를 발동시킨다.
· 사전에 지정해 놓은 1차 또는 2차 대피경로를 통해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건물 밖의 집합장소로 즉시 대피시킨다. 집합장소가 폭발에 의한 붕괴 또는 지속적인 폭발로 인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재집합하도록 지시한다.
· 교육청에 폭발사고가 있었음을 통지하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한다.
·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 관련 중요문서, 정보, 물건, 물품 등을 지정된 사고지휘소로 가져올 사람을 지명한다.
· 교사로부터 학생명부를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명한다.

· 가스, 전기, 수도 등 관련 시설을 잠그기 위해 움직이는 것에 별다른 위험성이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지시한다.
· 비상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교육장, 소방관, 경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의 집합장소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결정되면, 교직원과 학생들을 재배치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한다.
· 재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가동시킨다.
·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수업 진행 계획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응급재난기관으로부터 건물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교직원과 학생의 건물진입을 금지시킨다.

2) 교사/직원

· 수업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들을 챙긴 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침착하게 학생들을 건물 밖 지정된 집합장소로 데리고 나온다.
· 1차 대피경로가 막혔다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2차 또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대피경로를 이용한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는다거나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모든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한다.
· 집합지역에서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알린다.
· 학생들과 함께 머물면서 추후의 지시를 기다린다.
·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 안전한 지역에 대기한다.
· 학교 밖에서 재집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는 경우 학생들에게 이동을 준비시킨다.
· 재난안전기관의 확인이 있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12 현장체험활동(구 수학여행 등)에서의 사고

<현장체험 버스사고>

일반적으로 버스는 학생들을 단체로 이동시키는 경우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버스기사가 안전한 운전을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차량운전자의 부주의나 날씨 등으로 인해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가 현장체험활동에 사용할 버스에는 항상 응급상자, 소화기, 손전등, 비상경고장비(교통사고 안내판, 야광조끼 등)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버스사고 발생 시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비상대응기관(119, 112)에 응급지원을 요청한다.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한 위치, 사고의 심각성, 부상자, 현재 버스에 비치된 장비 등을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응활동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활동 그리고 사고로 인한 2차적 위험상황(화재 등)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린다.
- 사고 발생 시 버스기사에게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고, 시동을 끄며, 비상등을 켜도록 한다.
- 사고로 인해 필요한 후속의 대응행동을 실행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버스 안에서 침착하게 있도록 지도한다.
- 버스기사에게 사고에 의한 화재와 같은 2차적인 위험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확인하도록 한다.
- 후속차량에 의한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가 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란 것을 다른 차량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

- 학생들을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만일 화재나 다른 차량에 의한 추돌 등과 같은 2차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학생들은 안전한 버스 안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한다.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부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부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부상자를 버스 밖으로 옮기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장/사고지휘관 또는 응급대응기관이 사고로 인한 상황 변화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상황 변화를 알려준다.
- 만일 학생들이 사고버스에서 다른 장소(병원, 피난장소, 다른 버스)로 이송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정보(이송된 학생의 이름 등)를 학교장/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학생과 차량의 추가적인 부상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에 대한 증거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유지한다.
-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찰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구급요원들의 지시에 협조한다.
- 사고처리가 종결된 이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 버스사고 발생 시 학교장/안전책임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사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을 찾아 보내거나 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를 지원할 교직원을 사고 현장으로 파견한다.
- 사고 현장에 필요한 지원이나 물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버스 탑승객의 이름, 상태,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송된 경우 그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후, 교육청과 학교의 부모연락 담당자에 이를 통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상자를 치료하는 응급요원(또는 이송병원의 치료의사)에게 학교가 보유한 특별배려학생들에 대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에 파견된 교직원들에게 후송하는 부상자들과 함께 움직일 것을 지시한다.
- 「가정복귀(학생/학부모 인계)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 「외상 후 스트레스의 모니터링과 치료」 프로토콜의 실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13 화학물질 사고

가. 목적

화학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누출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및 학교재산을 보호한다.

나. 학교 보유 위험물질 관리

· 교내에 보관 중인 화학물질에 대해 한 달에 두 번 상태를 점검한다. 이러한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 시 학교는 경보시스템을 발령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이를 알린다.
·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 보관, 생산 또는 배출하고 있는 산업체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질을 사용/보관/생산/배출하고 있는 산업체와 이들이 받은 안전등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한 지도 삽입 등

· 학교장/사고지휘관은 학교 외부에서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이 유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의 가동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대피
- 가정복귀
- 응급의료

- 정신건강치료
- 역대피
- 대피소

· 만일 학교 내부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동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피
- 가정복귀
- 응급의료
- 정신건강치료

다. 역할

1) 학교 외부에서의 화학(위험)물질의 유출에 따른 절차

· 학교장은 재난대응계획을 가동시킬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고 노출된 위험물질의 특성에 기초하여 적합한 학교 사고지휘관을 지정하며, 응급대응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대응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 재난안전지휘관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한다.

· 학교 외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①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와 112에 전화를 걸어 응급구조기관과 경찰에게 사고발생을 알린다.

· 역대피 또는 대피소 대피 등 어떤 절차를 가동시킬 것인가를 결정한다.

·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물 관리자에게 환기시스템을 끄도록 지시한다.

· 학교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사고 발생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교육청/관련기관)에게 사고로 인한 상황과 취해진 조치가 무엇인지 알리고, 이들에게 상황 변화에 따라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한다.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를 통해 사고 관련 상황을 파악한다.

· 만일 대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결정한 경우, 도보나 차량 등을 통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다시 집합할 것을 지시한다.

· 지정해 놓은 재집합 장소를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집합 장소를 새로이 선정하고 이를 통보한다.

· 사고발생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고 필요시 가정 복귀 절차의 실행을 준비한다.

· 관련기관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위험이 모두 해소되어 학교가 다시 안전해졌다는 것을 통보받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학교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임시휴업 등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사고발생 및 진행에 따라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해 놓는다.

② 교사/직원

· 학생들이 즉시 위험인접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동시킨다.

· 학생들이 건물 밖에 있는 경우 즉시 이들을 건물 안으로 대피시킨다. 깃발이나 나뭇잎의 흔들림을 관찰하여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한다.

· 학교 사고지휘관으로부터 대피소 대피를 지시받은 경우 이를 실행한다.

·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는 동안 학생들과 함께 행동한다.

· 실종 또는 부상학생이 있는 경우 이를 학교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전까지는 안전지역에서 머물도록 한다.

· 건물이 파손된 경우 건물 안 또는 밖의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만일 대피절차를 실행하였다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절대로 다시 건물로 들어가지 않는다.

· 사고에 따라 취한 모든 행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2) 교내에서의 화학(위험)물질의 유출에 따른 절차

· 노출된 위험물질의 특성에 기초하여 적합한 학교 사고지휘관을 지정하고, 응급대응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사고 대응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한다. 재난안전지휘관이 도착한 이후에는 이들의 지시에 따르고 협조한다.

· 학교 내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

① 위험물질의 유출을 발견한 사람

· 유출이 일어난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을 경고한 후 그 지역에서 벗어난다.

·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서 감염지역으로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 학교장/학교안전관리자(필요한 경우 119 등)에게 위험물질의 유출에 관해 알린다.

· 만일 유출물질과 접촉하였다면 응급처치방안을 찾아본다.

② 안전책임관의 활동

· 지역 소방본부와 관계기관에 위험물질의 유출을 통보한다.

·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 학교명과 주소
- 유출사고가 발생한 위치/유출된 위험물질의 이름(알고 있는 경우)
- 유출물질의 특성(색깔, 냄새, 눈에 보이는 가스 발생 유무)
- 부상자 발생 현황(만일 발생하였다면)

· 대피 등 어떤 절차를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응급재난기관과 경찰에 대피절차를 시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한다.

· 대피시에 화학물질이나 유독가스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필요하고 또한 가능한 경우, 시설관리자에게 환기시스템의 가동을 정지시킬 것을 지시한다.

· 학교장, 교육장/정책집단에 사고발생의 상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알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변화 발생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내부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가동한다.

·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도보, 교통수단 등을 활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위험대응기관으로부터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소방관/재난안전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행동을 실행한다.

· 학교를 임시로 폐쇄할 것인지 개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③ 교사/직원

· 위험지역 가까이에서 벗어나고 위험지역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모이지 않는다.

· 학교 사고지휘관에게 위험물질의 위치와 유형(만일 알고 있다면)에 관해 보고한다.

· 대피절차를 실행하고 재집합 장소로 학생들을 이동시킨다. 만일 재집합 장소에 도시가스나 LPG 유출에 의한 냄새가 존재한다면, 이를 학교 사고지휘관에게 알린 후 즉시 그 장소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한 필요물품들을 챙긴다.

· 모든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는지를 체크한다. 대피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학생들끼리만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대피 장소에 도착한 이후 출석을 확인한다. 실종 또는 부상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 사고지휘관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 응급구조기관으로부터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절대로 건물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14 화재

가. 목적

·학교는 소방훈련에 관한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며 이에 따른 훈련을 실시한다. 모든 교직원들은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훈련받는다.
· 화재 또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또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즉시 신고한다.
· 비상사고지휘관(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현장에서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협력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119에 신고하거나 신고자를 지정하여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였음을 알리고, 학교 이름과 위치, 화재 또는 연기가 나는 정확한 장소, 교직원 또는 학생들 중의 부상자 발생 유무와 규모, 대피 실행 여부, 교내 사고지휘소의 위치를 알린다.
· 대피 명령을 발동시킨다.
· 교직원, 학생, 방문객들을 지정된 대피경로(1차 대피경로가 화염이나 건물파손 등으로 인해 막힌 경우에는 2차 대피경로를 이용)를 이용하여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즉시 대피하도록 한다. 지정된 집합장소가 건물붕괴나 화염 등으로 인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집합장소를 재배치한다.
· 교육청에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시작한다.
· 교직원에게 학교 방문자 명단, 조퇴학생 명단, 사고대응에 필요한 중요문서, 도면, 정보, 물품 등을 교내에 설치된 사고지휘소에 가져오도록 한다.
· 교사들로부터 등교학생의 명단을 취합하여 실종학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할 직원을 지정한다.
·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화재로 인해 안전이 불안해진 경우)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밖으로 대피하여 지정된 재배치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 재배치를 실행하는 경우 가정복귀 절차를 가동시킨다.
·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건물로 다시 돌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화재현장의 소방관 또는 재난지휘관으로부터 안전을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 교직원들에게 비상상황에 관한 정보, 이들이 언제 교실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2) 교사/직원

· 출석부,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챙기고, 학생들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차분하게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다.
· 지정된 경로가 막혔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대피경로를 활용한다.
·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탈출을 돕거나 또는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

·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명을 끄고 교실 문을 닫는다.
· 집합장소에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한다. 실종자,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사고지휘관/학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 학생들이 집합장소에 모여 있도록 지도하면서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린다.
·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
· 소방서에서 안전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15 응급의료

가. 목적

학교안전사고 등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학교 응급의료체계의 실현과 이를 통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직원에게 119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필요하면 응급구조요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다.
· 응급구조/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 훈련을 받은 교직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을 사고 현장으로 보낸다.
· 119 구급대원이 학교에 도착하는 즉시 사고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구급대원이 오는 장소에 직원을 미리 보내 놓는다.
·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부상자 곁에서 이들과 함께 동행 할 수 있는 교직원을 배치한다.
· 부상자가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인 경우 부모, 보호자 또는 그 밖의 적합한 가족구성원에게 부상(질환)의 형태, 현재 상황, 취해진 응급조치, 부상자가 이송된 병원이 어디인지 알린다.
· 부상학생(교직원)에 관한 의료 관련 정보를 후송병원에 명확하게 전달한다.
· 응급의료 프로토콜의 가동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취한 모든 활동들을 기록한다.
· 응급환자를 발생시킨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정신건강 치료' 절차의 시행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2) 교사/직원

·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 우선, 자기가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건담당 교사/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이를 알린다.
· 부상이나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한다.
·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119에 전화하도록 한다. 학교명, 주소,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장소(건물명, 층수, 교실번호), 질환 또는 부상의 형태, 환자의 나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다.
· 환자의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한다.
· 응급의료인력(응급구조요원, 간호교사, 해당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등)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의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 부상자의 호흡이 없다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동제세동기(AED, 심장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말하고, AED가 도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다. 만일 AED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 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용법에 대한 지시를 들어가며 AED를 사용한다.

16 폭염

가. 목적

통상 30℃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에 의한 열부종,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기상청의 폭염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자제시키도록 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을 점검.확인한다.

· 기상청의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시키도록 한다.

·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 발생 시 학교의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2) 교사/직원

· 폭염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 폭염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야외활동을 자제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그늘이나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 폭염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

-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실외.야외활동을 금지시킨다.
-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

· 폭염에 의한 환자 발견 시 생명이 위험한 긴급 상황임을 인식하고, 119 연락 및 현장에서 몸을 차게 식히는 등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한다.

- 시원한 장소(통풍 잘되는 그늘,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 등)로 옮긴다.
- 옷을 벗긴 후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차게 식힌다. 만일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이마, 목, 겨드랑이, 가랑이 등에 대어 몸을 식힌다.
- 환자의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
  ◦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스포츠 드링크)를 먹인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식염수 → 물 1ℓ에 소금 1~2g)을 섭취케 한다.
  ◦ 필요시 119에 연락한다.
- 환자의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119에 연락한다.
  ◦ 불렀을 때나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이상하거나 응답이 없거나 토하는 증상을 보이면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며 수분섭취를 금지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

3) 보건담당 교사/영양교사

·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한다.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폭염에 취약한 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자와 과체중자)를 특별 관리한다.

17 황사

가. 목적

눈, 코, 기관지 질환, 심한 경우 심장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빈번한 황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기상청의 황사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황사주의보(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 범위로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 시 이를 교사들에게 알려 학생들의 실외.야외학습을 실내학습활동으로 검토.조정할 것을 지시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을 점검.확인한다.

· 기상청의 황사경보(매우 짙은 황사 :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 시 교사들에게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보고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조기귀가, 치료 등) 여부를 결정한다.

2) 교사/직원

· 황사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 학생들에게 황사 발생 대비 목, 코, 눈 보호를 위한 다음의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 황사 발생 중 실외.야외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검토.조정한다.

· 황사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하며, 특별 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결정시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이를 실행한다.

3) 보건담당 교사/영양교사

· 학교급식 관련 위생관리를 점검.강화한다.

· 황사 관련 질환자의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등) 필요성을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한다.

· 황사 종료 후 실내.외(급식소)를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18 태풍·집중호우

가. 목적

폭풍우를 동반하는 태풍과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 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재난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집중호우 주의보.경보를 확인한다.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관련 기상예보를 토대로 학교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 조정, 단축수업, 휴업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를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신속히 알린다.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주의보(태풍으로 인한 강풍.풍랑.호우가 예상될 때, 6시간의 강우량이 7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학교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확인한다.
  -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를 교직원에게 알린다.
  - 교사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의 교육 실시를 지시한다.
  -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용한다.
  - 침수.단전 등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다(접근금지 표시, 배수로 청소, 옥상 배수관 점검 등).
· 기상청의 태풍.집중호우 경보(태풍으로 인한 강풍.풍랑.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6시간의 강우량이 11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
  - 필요시 등.하교시간 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한다.
  - 교사들에게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의 재교육 실시를 지시한다.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을 검토.조정한다.
  - 토석류 붕괴, 산사태 등 학교 내 위험지역 접근을 막는다.
  - 등.하교 시 위험상황(침수, 통학로 소실 등)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 피해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2) 교사/직원

· 태풍.집중호우 주의 또는 경보 발령 시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한다.
  -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을 금지한다.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다(감전위험).
  - 벼락이 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
  - 가급적 혼자서 다니지 말고 친구, 선배 등과 함께 동행 한다.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해야 한다.
  - 호우로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피한다.
  - 학교 내 붕괴우려지역(공사장 주변, 옹벽, 경사지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을 꼭 닫는다.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리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

3) 시설관리자

·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침수, 파손, 붕괴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 학교장/안전책임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을 실행한다.

19 식중독

가. 목적

식품섭취로 인해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인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

나. 학교급식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관 심(Blue)	주 의(Yellow)
판단 기준	• 식중독지수 : 10~34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 식중독지수 : 35~50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 보도 •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조치 사항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 ▸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구분	경 계(Orange)	심 각(Red)
판단 기준	• 식중독지수 : 51~85 •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이상 발생 •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 식중독지수 : 85이상 • 집단급식소에서 100명이상 식중독 발생 • 단위학교 학생의 30%이상 설사환자 발생 •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조치 사항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 ▸ 체험학습 억제,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 ▸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20 실험·실습안전

가. 목적

실험.실습 시 화재, 화학사고, 화상이나 외상 등의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처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교의 재산을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실험.실습 중 화재, 폭발, 화학물질 누출 발생시 비상경보를 통해 그 사실을 교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 실험.실습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프로토콜에 따른 대응절차를 실행.지휘한다.
  - Drop-Cover-Hold
  - 대피
  - 화재
  - 폭발
  - 화학물질 사고
  - 응급의료

2) 교사/직원

· 학교장/사고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대응절차와 행동수칙을 실행한다.
· 실험.실습 중 사고 발생 시 이를 학교장/안전책임관에게 즉시 알린다.
· 사고에 의한 부상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한다.
  - 학생 화상 발생 시 찬물에 열기를 식히는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보건교사에게 화상 발생 사실을 알려 필요한 지원 또는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화상 부위가 넓을 때는 찬 수건으로 감싼 후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외상의 경우 학생의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거즈를 부착한 후 보건실에 사실을 알려 필요한 지원 또는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외상에 의한 출혈이 심한 경우 압박.지혈하고 보건담당 교사에게 외상 사고 발생을 알린다.
- 이물질이 박힌 경우 박힌 부위를 움직이지 말도록 지시한 후,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려 지원을 받는다.
- 산이나 염기가 묻은 경우 묻은 부위를 물로 씻어낸 후,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려 지원을 받는다.
- 눈에 약품이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않도록 지시하고 신속히 물(생리식염수)로 씻어낸 후,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려 지원을 받는다.
- 유독가스.휘발성 액체증기를 흡입한 학생 발생시 학생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긴 후 119에 지원을 요청한다.
- 유독가스.휘발성 액체증기 흡입으로 인한 호흡.심장 정지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에 지원을 요청한다.

· 보건교사가 부재 또는 중상인 경우 119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한다.

21 방사능 방재

가. 목적

원자력시설의 손상에 의한 방사선 노출 시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 역할

1) 학교장/안전책임관

· 원전사고 발생 시 방송을 청취하면서 지자체의 안내에 따른다.

·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대피소 대피, 역대피, 방호약품 복용 등에 관한 지시를 내린다.

2) 교사/직원

· 청색비상시/옥내대피(원자력시설 주요 안전장치의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로 국한되는 경우)

- 신속하게 경보를 전파한 후 학생들의 교실 입실을 유도한다.
- 실내 에어컨과 환풍기를 차단한다.
- 갑상선 방호약품을 확인하고 수령한다.
- TV, 라디오, 전화 등 상황파악 후 방호용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한다.
- 학부모의 학교방문 자제를 요청한다.

· 적색비상시/소개시(원자력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발령,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학생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 시.군 지원차량의 이동경로와 시간을 확인한다.
- 교실을 벗어날 때에는 백색 타월로 소개 여부를 표시한다.
- 구호소 도착시 인원파악 및 건강점검 후 유관기관에 보고한다.
- 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방호약품의 복용을 지도한다.

※ 방호약품은 방사선 누출에 의한 대기 중의 방사성 요오드(옥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안내에 따라 복용하는 안정화요오드를 말한다.

22 지진

가. 목적

지구 내부의 단층 붕괴 등에 의해 발생되는 지진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나. 단계별 행동수칙

1) 안전 확보

· 지진 발생 직후 머리 보호 및 책상 아래로 대피 지시

- 손, 책,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
- 출입문 개방 및 각 학급의 전원 차단
- 흔들림 후, 화재 등 2차 재난 방지

2) 대피

· 흔들림이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에 따라 신속한 대피 지시

- 전교생 대피 지시(방송, 타종, 음성, 메가폰, 호루라기 이용)
- 인솔 교사 통제 하에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신속하게 정해진 대피경로를 따라 이동 지시
- 학교 건물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운동장이나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인솔 교사는 대피 장소 학생 질서 유지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학생 대응

3) 긴급 대응 방안 강구

· 학교장 주제로 초동 대처 및 향후 대책 결정

- 학생전원대피여부 파악
- 학생안전상태 및 피해상황 파악
- 지진 규모, 진앙 확인
- 수업 진행여부
- 귀가 시 학생 안전대책 등

23 자외선

가. 자외선 지수

단계	설명 및 주의사항
위험 (11이상)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가장 위험함. 가능한 실내에 머물러야 함. 외출 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함.
매우높음 (8~10)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외출을 피하고 실내나 그늘에 머물러야 함. 외출 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함.
높음 (6~7)	햇볕에 노출 시 1~2시간 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함. 한낮에는 그늘에 머물러야 함. 외출 시 긴 소매 옷, 모자, 선글라스 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발라야 함.
보통 (3~5)	2~3시간 내에도 햇볕에 노출 시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음. 모자, 선글라스 이용.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함.
낮음 (2이하)	햇볕 노출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함.

나. 자외선 대처법

1)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대처법

- 찬 우유나 차가운 물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함.
- 수포가 생긴 경우에는 전문의 치료

2) 자외선 대처법

- 오전 10시~오후 3시 사이에는 자외선 조사량이 최대가 되므로, 일광노출을 피한다.
- 챙이 넓은 모자나 헐렁한 셔츠, 긴 바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다.
- 자외선 지수를 확인하여, 지수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보호를 강화한다.
-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되, 옷에 가려지지 않는 모든 피부에 바른다.

※ 미국 암 학회에서는 일광차단지수(SPF)가 15 이상인 것을 권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려면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며, 피부에 흡착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햇볕에 노출되기 최소 30분전에 발라야 한다.

※ 흐린 날씨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겨울 스키장이나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자외선 반사가 많으며, 유리창으로도 일부 자외선이 통과되고, 햇빛은 30cm 정도 두께의 물도 통과하므로 야외 활동시 이를 참고해야 한다.

Ⅵ 복구 활동

1 재난사고 발생 시 심리적 치료 체계 구축

가. 목적

· 학생 자살 또는 학교구성원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학교구성원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등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이차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사회적 확산을 방지

나. 학교의 역할

1) 사전 조치사항

· 학교는 학교 내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각 역할을 분담한다.
  - 구성 시 학교 내·외 전문가를 위기대응팀에 구성하고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한다.
· 학교장은 위기대응팀 구성원들이 담당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학생 자살 또는 학교구성원들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후 신체적·정신적 징후에 대한 연수나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재난위기 발생 시 정신적·심리적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다.

2) 사후 조치사항>

· 학교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1차 위기대응 관계자(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장소는 학교로 하며, 사건에 대한 공지와 학부모 공지 수준, 이후 진행될 위기 대응 일정조율, 시간 계획과 각 담당별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 확인된 사실만을 교사 → 학생 → 학부모 → (필요한 경우) 언론의 순서로 공지한다.
  - 공지하는 범위는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하며, 학생에게 공지할 경우 담임이 반별로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전체 방송안내 지양).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서면과 휴대전화 문자를 함께 이용한다(서면 안내문이 유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 고려).
  - 언론공지는 반드시 교감으로 일원화하여 공지한다.
· 학생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학교 내에 위기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휴게실 및 상담실)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 심리적 위기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 위기관리학생 Wee 센터 연계 상담 및 심리상담(조언) 기관 안내

연번	설립구분	기관명	기관 연락처	주소 (도로명 주소)	상담 및 치료내용
1	Wee 센터	가평교육지원청 Wee센터	031-580-5164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17	개인상담 및 심리평가, 대안교육 프로그램,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2	공공 센터	가평군청소년 상담복지센터	031-582-2000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3	공공 센터	가평군정신건강 증진센터	031-581-8881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건강지원센터 1층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4	공공 센터	가평군건강가정 지원센터	070-7510-5878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행정정보관 3층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5	병의원	청평 우리 병원	031-585-5115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791-11	정신건강의학, 심리평가, 심리치료, 심리상담

2 시설복구

가. 교육시설공제회의 공제급여(재난복구비) 신청절차.

나. 화재발생시 관련기관 비상연락망

구 분	연 락 처	기 능
가평교육지원청	평일 : 031-580-5133	관재(방재)담당
	야간,공휴일 : 031-580-5172	당직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일 : 031-820-0727~8	재난예방과 방재재난관리담당
	FAX : 031-820-0749	
	031-820-0524 (야간,공휴일 : 031-820-0514)	북부청사 당직실
	FAX : 031-821-1023	
설악면사무소	031-584-7301	
가평소방서	031-580-0124	
설악파출소	031-584-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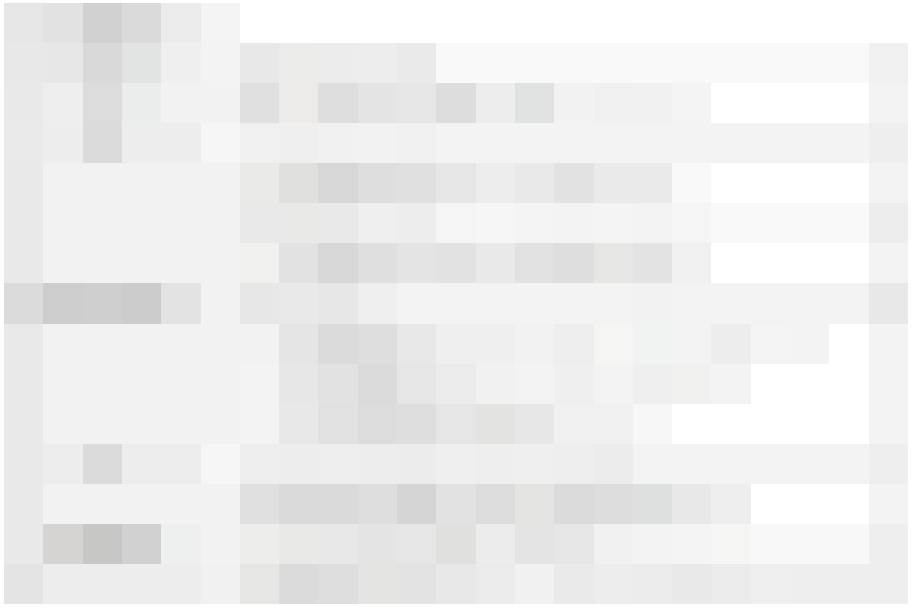
3 피해보상의 청구

가. 교육 활동 중 인적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 청구 절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교, 현장실습,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을 말함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사고통지 및 청구절차>



[별첨 1] 비상연락망

□ 교육부 업무담당부서 비상연락

기 관 명	전 화 번 호	FAX	비 고
교육부(총괄)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 044-203-6355	044-203-6971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교육시설과	044-203-6183	044-203-6305	시설관리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3 (학교급식) 044-203-6547 (감염병)	044-203-6438	학교급식, 감염병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044-203-6991	학교폭력, 심리치료 지원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3(6774)	044-203-6456	유치원 안전사고
교수학습평가과	044-203-6346	044-203-6598	휴업 등 학사조정
당직실	044-203-6118~9	044-203-6114	야간

□ 의료기관 현황

◎ 권역응급의료센터 현황

지역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응급실	주 소
의정부	의정부성모병원	1661-7500	820-5200	의정부시 평화로 650

◎ 지역응급의료센터 현황

지역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응급실	주 소
남양주	남양주한양병원	510-0114	510-0119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70외10필지
구리	한양대구리병원	560-2114	560-2050	구리시 교문동 249-1

◎ 지역응급의료기관 현황

지역	의료기관명	대표전화	응급실	주 소
남양주	현대병원	574-9119	574-0114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63
가평	청심국제병원	589-4300	589-4969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77

[별첨 2] 학생 7대 안전교육 관련 참고 사이트

명칭		주요내용	교육자료		웹 주소
			영상	교재	
1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각급 학교 학생 7대 안전교육 관련 교수-학습 및 교육과정 재구성 자료 ※ 보안 문제로 링크가 연결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웹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여 활용	○	○	**경기도교육청** (http://www.goe.go.kr/) **학교안전-안전교육자료** (http://www.goe.go.kr/edu/bbs_new.do?menuId=3401512162349 58&bbsMasterId=BBSMSTR_000000030062) **통합자료실-안전정책과** (http://www.goe.go.kr/edu/bbs_new.do?menuId=2901512091456 14&bbsMasterId=BBSMSTR_000000030050)
2	**경기도교육청 (나.침.반)**	나를 지키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5분 안전교육	○	-	**경기도교육청** **통합자료실-재난예방과**
3	**교육부 학교안전 정보센터**	* 7대 안전교육, 안전연구학교 자료, 수련시설 안전정보 등 각종 자료	○	○	**학교안전정보센터** (http://www.schoolsafe.kr/main5/)
4	**국민안전처 대표 홈페이지**	* 각종 재난,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 국민행동요령, 기상청 정보 어린이안전 교육자료 탑재 (연령별 안전교육자료 등)	○	○	**국민안전처** (http://www.mpss.go.kr/home/)
5	**EBS 교육방송 "안전을 약속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법과 대처방법 등	○	-	**안전을 약속해** (http://home.ebs.co.kr/promisesafety/main)
6	**중앙119 구조본부**	구조기법 및 기술 (전문적 구조 매뉴얼), 국민재난대응행동요령 등	○	○	http://www.rescue.go.kr
7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위기대처법, 응급상황대처요령, 화재사고 대처, 재난사고 대처요령, 생활사고 대처요령 등	-	○	http://119.gg.go.kr
8	**국민 안전방송**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전반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작된 각종 재난 관련 영상들	○	-	http://tv.mpss.go.kr
9	**사이버 교통학교**	교통안전에 대해 보고, 듣고, 미리 체험하고, 수료증 발급 등 (유,초,중,고 지도교사 자료 등)	○	○	http://cyedu.koroad.or.kr